#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3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민형배·정준호·김문수

박지혜 • 이재강 • 이정문

남인순 · 정성호 · 윤준병

문정복 · 김태년 · 윤후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 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 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 법률 제 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14일"을 "7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정보도청구권 등의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	①
의 대표자에게 <u>서면으로</u> 하여	<u>서면 또는 전화,</u>
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	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
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	<u>로</u>
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	
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	
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정) ① (생 략)	제19조(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u>14</u>	② <u>7</u>
<u>일</u>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	<u>일</u>
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	

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 ⑩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 설></u>

2. ~ 4. (생 략)

②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u>.</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u>
하여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